

무거 비스타동원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I

공급개요 및 일정

- 위 치 :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822-1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지하 6층 ~ 지상 37층, 4개동, 공동주택(아파트) 48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분양가격 및 납부조건 : 추후 입주자모집공고 참조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 (단위 : m², 세대)

구분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약식 표기	세대별 면적(m ²)					배정 세대수		비고
			주택공급면적			기타공용 (주차장 등)	계약면적	확정	예비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민영 주택	084.9924	84A	84.9924	31.9143	116.9067	76.9656	193.8723	7	21	
	084.9913	84B	84.9913	33.3838	118.3751	76.9645	195.3396	7	21	
	084.9989	84C	84.9989	33.3029	118.3018	76.9715	195.2733	14	42	
	084.9947	84D	84.9947	35.0494	120.0441	76.9677	197.0118	14	42	
	084.9994	84E	84.9994	33.9968	118.9962	76.9720	195.9682	7	21	
	084.9994	84F	84.9994	34.0004	118.9998	77.0478	196.0476	-	-	
	합계								49	147

* 상기 공급내역은 향후, 인허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기관추천 유형별 배정세대 내역

(단위 : 세대)

구분	배정세대(예비입주자)							배정세대 소계	예비세대 소계
	84A	84B	84C	84D	84E	84F			
국가유공자	1(3)	1(3)	2(6)	2(6)	1(3)	-	7	(21)	
장기복무제대군인	1(3)	1(3)	2(6)	2(6)	1(3)	-	7	(21)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1(3)	1(3)	2(6)	2(6)	1(3)	-	7	(21)	
중소기업근로자	2(6)	2(6)	5(15)	4(12)	2(6)	-	15	(45)	
장애인(울산광역시)	2(6)	2(6)	3(9)	4(12)	2(6)	-	13	(39)	
소계	7(21)	7(21)	14(42)	14(42)	7(21)	-	49	147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주택형별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 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분양일정

구분	일자	참고사항
입주자 모집공고(예정)	2022.12.02.(금)	일간신문 및 무거 비스타동원 홈페이지 (http://www.dongwonapt.co.kr/mugeo)
건본주택 오픈	2022.12.02.(금)	당사 건본주택 (특별공급 안내문 참조)
특별공급 접수일시(예정)	2022.12.12.(월)	인터넷 청약접수(09:00~17:30)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 또는 청약홈 앱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2022.12.20.(화)	한국부동산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 또는 청약홈 앱에서 조회가능
계약 체결	2023.01.02.(월) ~01.04(수)	장소 : 당사 건본주택 시간 : 10:00~17:00

- ※ 상기 일정은 업무추진 중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방문접수시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문 참고 또는 무거 비스타동원 대표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II

특별공급 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02.(금) 예정)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등에 따라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함.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함)

추천대상자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필요 없음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 복무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지역별 청약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전용면적85㎡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102㎡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135㎡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정의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제2조의4에 따라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과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받은 자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특별공급은 한차례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공급함)
 3. 과거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속한 자
- ※ 청약제한사항 확인 방법 :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유의사항

- 신청 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추천여부, 청약신청 및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청약통장 효력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이 책임지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청약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 및 계약불가]

III

당첨자 선정 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청약홈) 신청이 원칙이며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 및 계약 불가합니다.
- 가입기간 및 예치금액 인정, 신청자격 판단의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예정)입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관리지정기관(한국부동산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IV

유의사항

- 상기 분양일정은 인·허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본 아파트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은 취소됩니다.
- 첨부되는 제출서류가 허위서류로 판명될 경우 청약 당첨 후에 계약을 하여도 계약 취소 사유가 되며,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주택 청약 신청함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 전매제한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2022.12.02.(금) 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희망하는 주택형별 세부사항 등은 당사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 및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오시는길 및 대표번호



문의 : 052.922.5000